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61

발의연월일: 2025. 4. 23.

발 의 자 : 김재원·문대림·김선민

신장식 · 강경숙 · 정춘생

박선원 · 황운하 · 박은정

서왕진 · 김준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제복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그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인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에서 각각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규칙에서는 경찰 복식의 종류, 지급기준 및 착용기간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계절을 가리지 않는 주·야간 출동 대기, 잦은 외근 등으로 기후환경, 근무 조건 등에 따라 기능성을 갖춘 적절한 복식을 착용할 필요가 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공무원의 막중한 책임을 고려할 때 그에 걸맞은 심미적 요소가 경찰공무원의 제복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이 기후환경, 근무 조건 등에 따라 적절한 복식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

성과 심미성(審美性)을 갖춘 적정한 품질의 복식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보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향상하고, 제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사항은"을 "그밖의 사항은"으로 한다.

-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 요성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이 기후환경, 근무 조건 등에 따라 적절 한 복식(服飾)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기능성과 심미성(審美性)을 갖춘 적정한 품질의 복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복제 및 무기 휴대) ① ·	제26조(복제 및 무기 휴대)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		
	<u>장은 경찰공무원의 책임 및 직</u>		
	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경찰		
	공무원이 기후환경, 근무 조건		
	등에 따라 적절한 복식(服飾)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u><신 설></u>	④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		
	<u>장은 경찰공무원의 직무능력</u>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기		
	능성과 심미성(審美性)을 갖춘		
	적정한 품질의 복식을 제공할		
	<u>수 있도록 연구·개발하고 이</u>		
	를 보급하여야 한다.		
③ 경찰공무원의 복제(服制)에	<u>⑤</u>		
관한 <u>사항은</u> 행정안전부령 또	<u>그 밖의 사항은</u>		
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